

울산지방법원 2024. 10. 8 선고 2024가단11871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인수청구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동인

담당변호사 이병정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0. 8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. 12. 28.자 매매를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변론 없이 하는 판결)

판사 이동욱

별지